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3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1714 취득세,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9. 9.
판 결 선 고	2016. 1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록세 12,394,3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자재 제조, 판매업, 건축자재 무역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1. 9.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3

14.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11. 11. 아파트형공장인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 소재 [redacted] [redacted]동 [redacte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중소기업자가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시세 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4. 5. 23.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장조사하고,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제조업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영업팀사무실)에 사용하여 감면조례 제24조 제2항 단서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4. 9. 10. 원고에게 취득세 5,473,800원, 등록세 5,373,010원, 농어촌특별세 547,360원, 지방교육세 1,000,160원 합계 12,394,3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28.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 26. 기각결정을 받았고(2015. 2. 2. 결정 통지), 2015. 4.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소형 창호와 방충망 제작 및 작은 크기의 시스템창호 부품조립 등의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가 공장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이 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3

건 부동산도 공장의 일부라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감면조례 제24조 제2항은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본문과 단서를 종합하여 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아 취득할 당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각 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아야 종국적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해석된다.

2) 한편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0. 4. 12. 법률 제10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8조의5는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열거하면서 제1항 제1호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 구 산업집적법 시행령(2010. 7. 12.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3

대통령령 제22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 5에서는 아파트형공장이란 한 건축물에 여러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6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은 아파트형공장에서 제조업을 하는 입주기업의 부대시설 중 사무실 또는 창고를 그 아파트형공장 건축물 내의 별도 구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려는 제조업자는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 참조)을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제조시설 없이 사무실 또는 창고만을 설치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12. 5. 22., 2013. 5. 13., 2014. 5. 13 3회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였을 때 이 사건 부동산은 폐문부재 상태였던 점, ② 피고 소속 공무원은 원고 직원과 통화에서 영업직원이 오전 10시 이전에만 이 사건 부동산에서 근무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장확인할 당시 촬영한 사진에는 제조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물건이 없는 점, ④ 원고의 조직도를 보면 '창호영업팀' 아래 '가든파이브'라고, 'K.C.C창호사업팀' 아래 '광주공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조시설 등이 설치된 공장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영업을 위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아파트형공장 내에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영업을 위한 사무실 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3

도로 사용한 것은 감면조례 제24조 제2항 단서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호제훈

판사 이민구

판사 이정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3

별지

관계 법령

▣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9. 5. 28. 서울특별시조례 제478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아파트형공장 및 협동화공장에 대한 감면)
②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0. 4. 12. 법률 제10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아파트형공장"이란 한 건축물에 여러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5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①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연구개발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23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공장의 범위)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제4조의5 (아파트형공장)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6조의4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⑤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제조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 아파트형공장이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에 한정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은 아파트형공장에서 제조업을 하는 입주기업의 부대시설 중 사무실 또는 창고를 그 아파트형공장 건축물 내의 별도 구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끝.